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은 불연물 포함 소각로에 투입해야 하나, 건설현장 등 배출단계에서 불연물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소각시설에서 불연물이 함유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폐토사 등 불연물은 반입량의 무게기준 연간 1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각공정없이 재위탁이 가능토록 허용하고자 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8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라.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운반, 보관 및 처분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불연물은 재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재위탁하는 불연물의 양은 반입량의 무게 기준으로 연간 10%를 초과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폐자원관리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371